

건양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선거 시행세칙은 학내 학생자치기구 선거(이하 “선거”라 칭함)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는 전(前)대 학생회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3.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제2조 (선거원칙)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세칙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오프라인(현장) 선거에 적용하며 온라인 선거를 실시 할 경우 별도의 내부 선거방침을 정하여 실시한다. 단, 온라인 선거 실시여부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20. 9. 25)
2. 선거시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지위 및 목적)

1.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갖는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2. 본 회의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둔다.
3.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 감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내는데 있다.
4. 선관위는 선거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이다.
5. 선관위는 선거를 주관한다.
6. 본 선거시행세칙에 규제된 사항 이외에는 최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명한 선거 진행에 위배된다고 판단될시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다.)

제5조 (자격 및 구성)

1. 선관위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다.
2.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대의원회 임원들로 구성된다.
3. 탄핵, 부재 등의 사정으로 선관위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대행한다.
4. 선관위 임기는 당선자의 확정과 제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선관위 위원장의 종료 공고와 동시에 끝난다.

제6조 (업무 및 권한)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3.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4.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5. 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6. 재선거 여부 결정
7. 사전선거운동 여부의 판단
8. 선거 시행세칙 위반 시 징계 결정에 관한 심의, 의결
9. 각 후보 간의 선거관련회의 및 합의, 협의 등 모든 회의의 진행
10. 개표 및 투표의 주관
11. 선관위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각 후보자와 공동 면담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 면담은 없도록 한다.
12. 기타 선거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판단 및 진행

제7조 (개회 및 의결)

1. 선관위의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관위 위원장과 선관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 5항, 6항, 7항, 8항에 관해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선거공영제'의 실행과 이의제기,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각 선거
본부(이하 선본)들의 본부장을 소집할 수 있다. (단, 선본장은 필요시 발언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관위 의결 시 참관에서 제외된다.)

제8조 (선거관리 경비)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선거권)

1.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2. 선거권자는 투표에 참가하거나 각 후보의 선거유세에 참관할 수 있고, 이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피선거권)

총·부총학생회장 피선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부총학생회장은 본교에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2.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균이 2.50이상인 자
3. 학사경고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징계 사실이 없는 자
4. 학생 20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제 4 장 선거인명부

제11조 (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학교 당국에 선거인명부(선거권을 가진 재학생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

제 5 장 후보자

제12조 (입후보 등록)

1.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공고된 후보자 등록일 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 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핵심 선거 공약 및 으뜸 구호 1부

다. 자치기구 탈퇴서

라. 추천인 명부(200명이상)

(가) 추천서의 진위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심의하고 허위, 조작, 위조, 동일후보에 중복 추천으로 판정되는 것은 추천인 총계에서 제외한다. 단 중복 경우에는 1인 추천으로 인정한다.

(나)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배부 한 것만 인정한다.

마. 선거자금 예산 계획서

바. 공통정책 자료집 편집원고(A4규격)

사. 선거운동인명부(충원 시 선관위에 사전 통보)

아. 사진 5매(정·부)

자. 기탁금 50만원

2. 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일체의 등록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3. 후보자가 직접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등록일을 어기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제9조 피선거권 자격에 해당하지 못한 후보가 정·부 후보 중 1인이라도 있을 경우 등록 할 수 없다.
6.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여타 학생자치기구는 자체규정으로 등록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한다.

제 6 장 선거운동

제13조 (선거비용)

1. “선거비용”이라 함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선거비용의 총액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책정하며, 후원이나 별도지원 비용 금액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3.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제반활동에 대한 예결산안을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선거비용 결산서 및 영수증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투표 전날 20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선관위에서 정한 총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선거본부에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100% 미만 초과 시 : 경고 1회
 - 나. 100% 이상 200% 미만 초과 시 : 경고 2회

제14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시작일(00월 00일 00시)부터 투표전날 18시까지로 한다.

제15조 (선거운동장소)

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며, 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할 수 있다.(단, 수업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관련 복장 및 내용물을 지정된 선거운동장소 이외에서 착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사전 선거운동)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를 위한 모임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제17조 (부정선거운동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선거운동행위에 따라 주의, 경고, 피선거권박탈, 선거무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 금전 살포나 뇌물수수를 하는 행위
2. 후보자 및 선관위에 대한 비방행위, 모략행위,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단, 발전적 비판은 보장한다.)

3. 홍보물 통제를 위반하는 행위
4. 투표 당일 날 투표 호객 행위
5.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투표권 및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인명부 소거 및 대리 투표행위
8.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선관위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선전물 배포
10. 강의실내 선거운동 및 강의시간에 방해가 되는 선거운동
11. 선관위가 개최하지 않는 집단 유세
12. 각 학과 총회 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13.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운동으로 판정된 행위
14. 개인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제18조 (선거운동 금지)

모든 학생자치기구 및 언론기관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제19조 (선거 운동원)

1. 선거운동원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며 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한다.
2.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홍보, 지지, 유세 등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원을 의미하는 복장 및 명찰, 이름표 등은 자유롭게 정하여 착용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원에 대해 금품(금전 및 물품) 제공을 금지한다.
5. 선거운동원은 학교를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6. 선거운동원 교체는 10명 이내로 제한하며, 교체 전에 선관위에 사전에 알린다.
7.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밑에 항목과 같다.
 - 가. 해당학기 학생자치기구에 공식 지위가 있는 자.
 - 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않는 사람
 - 다. 해당학기 학생자치기구에 공식 지위가 있는 자가 선거운동원을 할 경우는 선거 운동 시작일 이전에 사퇴했을 때만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개인유세)

1. 선거에 관련된 제반 내용을 갖는 공시물의 경우는 공시 전에 그 내용을 선관위의 승인을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어긴 공시물은 선거운동의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2. 모든 개인 유세는 하루 전 선관위에 신고한다.
3. 신고 요령
 - 가. 일시 : 00월 00일 00:00 ~ 00:00 (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 나. 장소 :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여 신고한다.
 - 다. 지지연사 : 학번, 이름, 학과 명시
4. 일시 장소 중복 시는 후보자와 선관위 입회하에 재결정한다.

제21조 (합동유세)

1. 합동유세는 선관위 관리 하에 총괄한다. (횟수, 장소 등)
2. 선관위가 개최하지 아니한 집단적인 소견 발표 행위는 할 수 없다.
3. 각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4. 한 후보의 유세 중 다른 후보의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5. 한 후보당 유세시간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2조 (선전물)

모든 선전물의 게시나 전시, 배포 전 내용을 해당 선관위에 내용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수막은 각 후보당 10개 이내로 하고 부착장소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2. 현수막의 내용교체는 3회 이내로 한다.
3. 현수막 및 선전물을 게시할 장소는 선관위에서 확보한다.
4. 선전물은 다양한 선거운동 물품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전물을 부착을 금지한다.
6. 선거운동 기간에 배포되는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허가를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7.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한 선거 유세를 허용하되, 계정명은 선본명으로 하고, 게시물은 선거운동 종료 시까지 20개로 제한한다.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게시글 또한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게시글에는 예비후보임을 밝힌다.

제 7 장 투 표

제23조 (투표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며, 선거인은 투표구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배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제24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일은 1일을 원칙으로 하며, 투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2. 각 투표소에 해당 선관위 위원의 지각, 부재 등의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선거시작이 불가능할 경우 선관위 위원장이나 해당 선거구 선관위 위원이 각 후보의 참관인의 동의하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 개시를 알리고 대리 관리한다.(단, 해당 선관위 위원이 도착하면 즉시 사과문을 공고하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다.)
3. 투표종료 선언 이전에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 중인 선거권자는 투표시간이 종료 되었어도 투표를 할 수 있다.(해당 선관위 위원은 대기 중인 선거권자가 없음을 확인 한 후 당일 투표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4. 마감시간이 끝나면 선관위는 투표소를 폐쇄한다.
5. 천재지변 및 인터넷의 장애 등으로 선거인명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

표를 중단 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 및 인터넷 장애를 제외한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한 투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의 권한으로 일시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제25조 (투표구 및 투표소)

1. 투표구와 투표소는 선관위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1개의 투표구 당 1개 투표함으로 한다. (단, 선관위의 판단으로 해당 투표구가 1개 투표소로 투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표소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3. 투표구는 선거일 7일 이전에 공시한다.

제26조 (신분확인)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를 할 수 있다.

1.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
2. 학생증 또는 모바일 학생증이 없을 시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검토 후 투표에 참여한다.

제27조 (투표소 관리)

1. 각 투표소는 선관위 1인과 대의원 1인이 관리한다.
(단,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대의원은 일반 학생으로 대체 가능하다.)
2.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이외의 행동을 할 수 없다.
3. 투표소에 후보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타 후보 측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 위원장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중단한다.
5. 투표소 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은 선관위 위원장의 입회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28조 (투표 참관인)

1. 참관인의 자격은 선거운동원의 자격 사항과 동일하다.
2. 각 후보자들은 각 투표소에 참관인 1인을 배치 할 수 있다.
3.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며 투표 진행에 대하여 문제점 발견 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투표 참관인 규제사항)

1. 참관인은 투표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참관인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2. 참관인은 항시 투표소에 있어야 한다.
3. 참관인은 선거권자의 투표에 관한 간섭을 할 수 없다.
4. 참관인은 타 후보 참관인이 투표소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주의조치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가.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나. 선관위의 서류를 유출하거나 선거권자의 정보를 알려준 경우(예 특정인의 정보유출)

- 다. 투표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라. 특정 입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 및 착용한 경우(예, 선거운동명찰, 선거운동복장 등)
 - 마. 특정 입후보를 지칭하는 언동을 한 경우
 - 바. 지정된 좌석에 고의적으로 착석하지 않은 경우
 - 사.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허락을 받지 않고 열람한 경우
6. 참관인은 투표당일 09시까지 투표장에 도착해야 한다.(단, 참관인이 늦을 경우라도 해당 선관위 위원은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시작한다.)

제 8 장 개 표

제30조 (개표진행)

1. 개표는 투표마감 이후 6시간 이내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사고시 선관위와 후보자간 합의를 통하여 연장 가능하다.)
2. 개표진행은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3. 경선일 경우 투표율이 50% 이상, 단선일 경우 투표율이 40% 이상일 경우에 개표를 진행한다. 부정, 징계 등으로 인해 선거가 무효로 판정된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

제31조 (개표소)

1. 개표소
 - 가. 개표소는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정한다.
 - 나. 개표소에서의 질서유지는 선관위 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 다. 개표소는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각 후보의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라. 개표소는 해당 선관위 위원과 각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이 참석한다.
 - 마.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관위원만 할 수 있다.
 - 바.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소가 소란하거나 개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표를 중단할 수 있다.

제32조 (개표 참관인)

1. 입후보별 개표 참관인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선관위 위원장이 각 후보자의 참관인을 추가할 수 있다.)
2. 개표 참관인은 개표 시작 30분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소에 입회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과정을 밟아야 한다.
3. 개표 참관인은 각 후보의 선거운동원 중에서 선정한다.
4.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 검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5. 개표 참관인의 교체는 해당 선관위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한다.
6. 개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개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 위원장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

루어 질 때까지 개표를 중단한다.

8. 참관인이 개표소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 위원장과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위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참관인이 퇴장 당한 측의 후보자는 개표소 내의 개표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33조 (유·무효표 및 부정투표)

1. 무효표

- 가. 선관위가 제공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 나.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
- 다. 2개 이상을 각 기표란에 표시한 경우. 기표한 중앙 구분선에 접한 기표
- 라.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마. 어느란에 기표를 한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바.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표

2. 유효표

- 가. 전항의 무효표 외에 후보자의 이름, 기호에 찍은 경우에 유효표라 한다.
- 나. 기표가 희미하지만 투표인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
- 다. 한 기표란에 두 번 이상 표기한 경우

3. 부정투표

- 가. 개표 실시 후 전산프로그램 상의 투표인원과 투표용지의 수가 오차 범위인 3%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투표로 간주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 나. 원 후보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후보자 신규 등록은 받지 않는다.

제 9 장 당 선

제34조 (당선의 기준)

1. 경선의 경우(후보자가 2인 이상)는 과반수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단선일 경우, 찬성표가 75%(투표인원에 3/4)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인으로 한다.

제35조 (이의신청)

1. 입후보자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개표가 종료된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통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이의내용을 심의,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선공고)

1.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24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는다.
2.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를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7조 (총학생회 임기)

총학생회의 임기는 당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로 한정한다.

제 10 장 징 계

제38조(시정 명령, 주의, 경고)

1. 선관위는 선거규칙 위반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경고를 준다.
2.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선본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는 않는다. 시정명령을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즉시 시정명령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3. 선관위는 선거규칙의 위반정도가 시정명령수준 이상일 때,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4. 주의 2회면 자동적으로 경고 1회가 된다.

제39조 (징계의 통보)

1. 시정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3.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판에 1장씩 부착한다.
4.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가.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 공개사과문을 부착하고 경고 직후 24시간 선거운동을 금한다. 단, 공개사과문의 문구는 선관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며 해당 선본장과 중선관위장의 최종 확인 후 게시한다.
 - 나. 경고 2회 - 경고 직후 48시간 선거운동금지, 공동 유세 시 유세시간 단축(단축의 정도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선관위는 선거규칙 위반 형태의 심각성을 공개, 게시하여 학생에게 알린다.
 - 다.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는 자격이 박탈된다. 선관위는 이를 학생에게 알린다.

제40조 (재심의)

1. 선본장은 경고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후보가 경고 3회로 인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될 상황이 된 경우에는 선관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제41조 (당선 취소)

1.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그 해당 행위를 학생에게 공개한다.
2. 선관위가 당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2조 (후보자 등록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한다.

1.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보자
2. 본 규칙을 위반한 일체의 행동을 한 후보자
3. 본 규칙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4.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후보자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보자 자격 박탈이 불가피한 후보자

제43조 (재선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1주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후보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후보 재등록(신규포함)은 받지 않는다.

1. 제34조 1항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2. 제34조 2항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3. 후보자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에 초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되었을 경우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유고하였을 경우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본 선거 세칙은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관례)

본 선거 시행 세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르며 최종 해석은 선관위가 한다. [건양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1호, 2018.09.06.제정]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선전물에 관한 공고

◎ 선전물

1. 현수막 ①,②

- ①가. 길이 : 10미터 이내
- 나. 폭 : 1.2미터 이내
- 다. 종류 : 2종 이내
- 라. 개수 : 1종당 3개
- ②마. 길이 : 6미터 이내
- 바. 폭 : 1미터 이내
- 사. 종류 : 6종 이내
- 아. : 1종당 1개

2. 포스터

- 가. 크기 : 4절 이내
- 나. 매수 : 50부 이내
- 다. 색상 : 제한 없음
- 라. 종류 : 3종 이내

3. 리플렛

- 가. 크기 : A4이내 (면수 제한 없음)
- 나. 종류 : 5종 이내
- 다. 부수 : 5,000부 이내
- 라. 색상 : 제한 없음

4. 공약자료집

- 가. 2종 이내
- 나. 면수, 색도 : 제한 없음
- 다. 부수 : 5,000부 이내

◎자료배포 및 게시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공약자료집은 게시, 배포 24시간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